

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1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(9.12)을 앞두고,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,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.8.16. ~ 9.9(25일간) 기간 중 『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』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
3. 이와 관련, 귀 단체에서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(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)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고, 아래와 같은 범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(회원사에 서신·메일 발송, 홈페이지 등재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-

- 가.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(세금계산서 발행일)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나.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(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)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
- 다.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라.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어음을 교부하는 행위
- 마.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,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. 끝.

